

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(제23조관련)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지정목적 |
| 2. 지정일자 : 년 월 일 |
| 3.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|
| 4.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|
| 가. 주 소 |
| 나. 면 적 |
| 다. 약 도 |

비 고

1.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, 세로 2미터, 높이 1.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2.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3.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.
4.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